

## 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안내 (3.24.시행)

-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」에 따라
  - 보건용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해외수출 원칙적 금지(3.6.시행)
  - **보건용마스크, 수술용마스크,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출 제한(6.1.시행)**

-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마스크로 인정되는 우편물 : 접수 가능(3.24.시행)
  - ※ **수출제한 마스크 확인방법 : 의약품안전나라(<https://nedrug.mfds.go.kr>) 검색**

- ☑ 대상: 내국인의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\*에 한함
  - \* (발송인기준) 직계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(4. 9.개선), 외국인 배우자(5.18.개선)
  - ※ 필요서류: 발송인 신분증(주민등록번호 확인) +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☑ 수량: 월 12매 이하(최초 접수(발송)일로부터 4주 후 재접수 가능)(5.18.개선)
  - ※ 수취인 기준이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 합산해서 적용
  - 수취인별 3개월분(12주 기준, 36매)을 미리 한 번에 접수 가능(5.1. / 5.18.개선)
  - 3개월분을 미리 접수하는 경우 접수(발송)일로부터 12주 후 재접수 가능
- ☑ 포장: 주소기표지(21\*15cm)를 부착할 수 있는 **상자에 포장**
  - ※ 서류봉투 X, 폴리백 X, 비닐포장재 X, 종이백 X
- ☑ 마스크 이외 **다른 물품은 동봉 불가**
- ☑ 인터넷(모바일)을 통한 **스마트 접수(EMS)** 후 접수확인서를 출력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 방문 (<https://www.epost.go.kr>)
  - ※ 발송인.수취인정보, 내용품 Family Mask, HS코드 6307909000 등 입력
- ☑ 동일 주소지에 여러 명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(4. 1. 개선)
  - 수취인 기준 수량(월 12매)과 가족관계 여부가 확인이 되면 접수 가능
  - 스마트(사전) 접수 시 수취인 명에는 대표 수취인(1명) 기재하고, 내용품명에는 수취인별 마스크 내역 각각 기재 'Family Mask(Hong Onedong) 12', 'Family Mask(Hong Idong) 12', 'Family Mask(Hong Samdong) 12' 로 구분.입력
  - 총 수량만 기재하고 내용품명에 수취인별 별도 내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예외허용 기준 미충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며, 추후 해외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

- **예외 인정기준 초과 및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며, 통관 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**
- **반송시(세관 압수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) 우편요금 반환 불가**